

본 안내문은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였으며,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,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(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은 「주택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)

1순위 청약안내

<p>대상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											
<p>청약통장 자격요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순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안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·청약부금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											
<p>당첨자 선정방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당첨자 선정 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순위 가점제 : ① 지역 → ② 가점 →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 추첨 - 2순위 : ① 지역 → ② 추첨 ① 지역 : 해당지역(청주시) 거주자가 우선하며, 잔여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(전국)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. ② 가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(가점제 적용기준)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/ 추첨제 적용비율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4 1182 1485 1323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가점제</th> <th>추첨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용면적 85㎡ 이하</td> <td>40%</td> <td>60%</td> </tr> <tr> <td>전용면적 85㎡ 초과</td> <td>-</td> <td>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		구분	가점제	추첨제	전용면적 85㎡ 이하	40%	60%	전용면적 85㎡ 초과	-	100%
구분	가점제	추첨제										
전용면적 85㎡ 이하	40%	60%										
전용면적 85㎡ 초과	-	100%										
<p>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,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.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,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. 											

청약통장 예치금액

입주자저축 예치금액	청주시 및 기타지역	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
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300만원	25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	600만원	4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400만원	1,000만원	700만원
모든 면적	500만원	1,500만원	1,000만원

*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.

*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.

일반공급 가점산정 기준표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	
① 무주택기간	32	만30세 미만 미혼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표등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•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 • 가족관계증명서 • 혼인관계증명서 :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	
	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	
7년 이상 ~ 8년 미만	16						
② 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표등-초본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•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만18세 이상 ~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 ②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초본, 출입국사실증명원 • 주택 및 '보양권' 등을 소유 또는 장기 해외체류중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	
		1명	10	5명	30		
		2명	15	6명 이상	35		
		3명	20		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본인	6개월 이상 ~ 1년미만	2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. • 실제 청약신청시에는 청약통장 가입일(기간)이 자동 입력됩니다. ※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%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,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※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※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증 순위확인서를 발급 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,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.
	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9	15년 이상	17		
		배우자	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	0	1년 이상 ~ 2년 미만	2	
			1년 미만	1	2년 이상	3	
총점	84	*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					

*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.

*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조회

* 순위확인서 발급 : 청약홈 > 청약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

*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: 청약홈 > 청약소통방 > APT 당첨사실 조회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,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명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